

[보조금분쟁] 정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-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형사처벌: 울산지

방법원 2015. 11 5. 선고 2014고단4002 판결



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수출 산업화 사업과제를 수행하던 중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거짓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, 행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500만 원을,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,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○ 피고인 A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, 제22조(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, 제27조(거짓 보고의 점), 형법 제225조(공문서 위조의 점), 형법 제229조, 제225조(위조공문서행사의 점), 형법 제231조(사문서위조의 점), 형법 제234조, 제231조(위조사문서행사의 점)

○ 피고인 주식회사 B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, 제41조, 제22조(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, 제42조 제4호, 제27조(거짓 보고의 점)

첨부: 울산지방법원 2015. 11 5. 선고 2014고단4002 판결

보조금유용, 행정소송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